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36,000,000	31,080,000
일반회계	881,000,000	26,430,000
특별회계	155,000,000	4,650,000
공기업특별회계	53,500,000	1,605,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700,000	951,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800,000	654,000
기타특별회계	101,500,000	3,04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220,000	186,6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876,000	86,2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92,000	26,760
주택사업특별회계	732,000	21,960
치수사업특별회계	15,930,000	477,9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727,000	231,810
대지보상특별회계	278,000	8,34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1,050,000	1,531,5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5,446,000	463,38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49,000	10,4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17,945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8,0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49,159천원, 내부유보금 1,968,786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